

지배구조내부규범

2017. 3. 30 제정

내규분류	경영
재·개정전결권자	이사회
내규소관부서	경영기획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IBK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이 주주와 예금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와 구성과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시) ① 저축은행은 지배구조법 제1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저축은행은 지배구조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매년 이 규범에 따른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저축은행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의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을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하는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는 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공시 및 그 공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정 등) 이 규범은 이사회 의결로 제정·변경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저축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이 규범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상호저축은행법, 지배구조법, 상법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률을 말하고, 그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관련 법률”이라 한다), 정관, 이사회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 구성 현황

제5조(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며,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6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선임한다.

②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제2절 이사의 자격요건

제7조(이사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되지 못한다.

1.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하는 사람

② 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8조(사외이사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되지 못한다.

1.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저축은행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전문경영인(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2. 정규대학 교수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
4. 최근 10년 내에 5년 이상 금융기관 종사자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제3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책임

제9조(이사회 권한) ① 이사회는 지배구조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도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기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 임원 등과 저축은행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에서 이사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종합경영분석
 2.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3. 그 밖에 이사회 및 의장이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지배구조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이사회내 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내 위원회를 말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10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저축은행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저축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저축은행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저축은행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는 저축은행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하여 저축은행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

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저축은행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1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① 저축은행은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배구조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축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이사의 선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12조(이사 선임의 기준 및 절차)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할 수 있다.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려는 경우, 그 재임기간 동안의 사외이사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이사 퇴임사유 및 절차) ① 이사의 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가 만료된 경우
2.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3. 관련 법률, 정관 등에서 정한 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의결된 경우

②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절 이사회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방법

제14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다른 이사가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회일 1주간 전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정기 또는 임시 이사회)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그 소집 회수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정기 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한다.

제16조(의결권 행사 방법) ① 이사회 의결은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 외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제1항의 의결정족수 계산에서 출석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절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17조(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그 활동내역을 기초로 주기적으로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의 연간 활동에 대한 평가는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는 자기평가, 저축은행평가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내 위원회의 종류·구성·기능

제18조(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 및 구성) ① 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이사회내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저축은행의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감사위원회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②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의결은 그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이 규범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대표(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는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합리적인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춘 자로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⑤ 이 규범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각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및 소집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한다.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개최일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결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20조(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중 1명 이상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 후보는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제18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하여 지배구조법 제19조 제6항 후단 및 제7항을 적용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 성과를 평가·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관계자의 출석·답변 등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그 역할 및 권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⑦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⑧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각 감사위원에게 개최일 1주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위험관리위원회)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2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저축은행이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6.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험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험관리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험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개최일 1주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절차 없이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보수위원회) ① 보수위원회는 2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보수위원회는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이 정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

③ 보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제2절 이사회내 위원회의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23조(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주기적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내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에 참고한다.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재선임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4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1절 임원의 자격요건

제24조(임원별 자격요건) ① 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7조를, 사외이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8조를 각각 적용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제28조 제3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및 업무집행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⑤ 저축은행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절 임원의 권한·책임

제25조(이사 등의 권한과 책임) ① 저축은행은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한다. 대표이사는 저축은행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저축은행의 업무를 분장 집행할 수 있다.

제26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 등의 권한과 책임) 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에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법령 및 저축은행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업무집행책임자는 저축은행의 내규 등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진다.

제27조(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책임) ① 준법감시인은 저축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 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축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법령 및 저축은행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①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 ② 제1항 이외의 위험관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법령 및 저축은행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절 임원의 선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29조(임원의 선임) ① 대표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항을 적용한다.
-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④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 ⑤ 업무집행책임자는 저축은행의 내규 등에 따라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제3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2조 제2항을 적용한

다.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이사회 의결로 정하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④ 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하여는 저축은행의 내규 등에 따른다.

제31조(임원의 퇴임) ① 이사 퇴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적용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로 해임하고,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되, 동일 순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선임자(선임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유 및 이사회의 해임 의결로 퇴임한다.

④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유 및 이사회의 해임 결의로 퇴임한다. 이 경우 해임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⑤ 업무집행책임자는 저축은행의 내규에 따라 대표이사가 해임한다.

제4절 임원 및 그 후보자에 대한 교육제도

제32조(임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① 저축은행은 임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저축은행은 임원의 경영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저축은행에서 정한 내부 또는 외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33조(임원후보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 ① 저축은행은 사내 임원후보자 중 선발된 인원에게 대하여 내부 또는 외부 교육 및 연수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저축은행은 임원을 선임할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의 방법

제34조(임원 성과평가 등) ① 임원에 대한 평가는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하며, 임원의 담당업무 성과 등에 연동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임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임원의 임면, 보수지급 등에 활용한다.

제35조(보수의 지급) ①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수체계에 관하여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평가결과 등에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보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임원의 보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개별 위촉(또는 위임)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제1절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제36조(경영승계 계획 수립 및 변경) ① 이사회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매년(또는 매 사업연도) 1회 이상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37조(경영승계 절차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시기) ① 최고경영자(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경영승계 절차(이하 "경영승계 절차"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개시된다.

1. 최고경영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2. 최고경영자의 사임, 해임 또는 최고경영자에게 제7조 및 제8조의 임원자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이사회가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결정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임기 만료 30일 전

2. 제1항 제2호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직후

3. 제1항 제3호의 경우 경영승계 절차 개시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

제38조(경영승계 절차) ① 이사회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저축은행 지체없이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최고경영자 대행자, 저축은행 운영 및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39조(비상상황 발생시 비상계획) ① 최고경영자가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순서로 최고경영자 직무를 대행한다.

② 최고경영자간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사회는 지체없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7조의 경영승계 절차에 준하여 절차를 진행하되,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여야 한다.

제2절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

제40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발굴 및 자격검증 등의 관리업무를 인사담당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인사담당 부서는 제1항의 업무 추진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최고경영자의 자격

제41조(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① 최고경영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저축은행의 비전을 공유하며, 금융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리더십과 경영혁신 마인드 등을 두루 갖춘 자여야 한다. 다만, 최고경영자로서의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절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제42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저축은행,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5절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제43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제6절 책임경영체제 확립

제44조(최고경영자의 임기 및 역할 등) ① 최고경영자의 임기는 이사회 의 결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최고경영자는 저축은행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최고경영자는 관련법령 및 저축은행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45조(최고경영자의 퇴임 및 평가) ① 최고경영자의 퇴임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적용한다.

②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범이 정한 사항에 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에 관하여는 지배구조법 부칙 제2조 내지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부칙이 정하는 적용례 및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